

##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수업운영 안내

※ 주요 학사일정은 ['학교 홈페이지>학사정보>기타>학부 학사일정'\(클릭\)](#)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### 1. 수업운영 지침

#### 가. 기본 방침 : 대면수업 전면 실시

- 교강사 및 학생 강의실 출석
- 코로나 확진 학생 대상 대체수업(상세 유형은 p.2 참고) 제공 필수

#### 나.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의 비대면 수업 운영

구분	지침	비고
교강사 확진 시	교강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일시적 비대면(실시간 화상강의)으로 전환	교강사가 결정하여 개별 공지
개별 강좌 내 수강생 30% 이상 확진 시	개별 강좌 내 수강생 확진 및 격리자 수 30% 미만 시까지 일시적 비대면(실시간 화상강의)으로 전환	개별 공지
전체 재학생 10% 이상 확진 시 (약 1,200명)	전체 재학생 확진 및 격리자 수 10% 미만 시까지 전체 개설과목 비대면(실시간 화상강의)으로 전환	학교 본부가 결정하여 공지

※ 개별 강좌 내 수강생 30% 미만 확진 시에는 대면수업 정상 진행함  
(단, 코로나 확진 학생 대상 대체수업 제공 후 출석 인정)

#### 다. 코로나 비상 상황별 대응 방법

##### 1) 교강사 확진 시

자가격리기간 동안 비대면(실시간 화상강의)로 전환하거나 건강 악화 등으로 실시간 화상강의 불가 시 휴보강 신청 후 학기 내에 보강 시행

##### 2) 개별 강좌 내 수강생 30% 이상 확진 시

① 개별 강좌 내 코로나 확진 및 격리로 인하여 전체 수강생의 30% 이상이 대면수업 출석이 불가한 경우 대면 출석 불가 학생이 30% 미만이 될 때까지 비대면(실시간 화상강의)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

※ 단, 확진된 수강생 중 건강 악화로 비대면(실시간 화상강의)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대체수업 제공 후 출석 인정하거나 유고 결석 처리

② 교강사가 스노우보드를 통해 일시적 비대면(실시간 화상강의) 수업으로의 전환 및 비대면 수업 운영방식/기간 등 개별 공지

##### 3) 전체 재학생 10% 이상 확진 시 (약 1,200명)

① 교내 재학생 확진자 수가 전체 재학생(전체 학위과정) 10% 이상인 경우 전체 학부 개설과목을 비대면(실시간 화상강의)으로 전환하여 운영

② 단, 수업 특성 상 대면수업 유지가 필요한 과목은 학교 본부에 신고 후 대면수업 운영 가능

③ 전체 개설과목 비대면 전환 여부 및 비대면 기간 등은 학교 본부에서 결정하여 전체 공지

## 라. 확진 학생 발생 시 대응 방법

구분	수강생	교강사
대체 출석	[1단계] 홈페이지의 코로나19대처현황>'대학에 신고하기' 또는 헤이영캠퍼스의 '코로나문진표'를 통해 신고 [2단계] 교강사에게 메일로 확진 관련 증빙 자료(확진통보 문자 등) 첨부하여 확진 사실 알림	대체수업 제공 후 출석 인정 처리

※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교 중지 학생은 대체수업 제공이 원칙이나, 건강 상태에 따라 유고 결석(신병)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증빙 제출 시 유고 결석 처리 가능

<p>▶ 대체수업 유형</p> <p>① 실시간 화상강의 송출 ② 실시간 화상강의 녹화영상 제공 ③ 강의실 대면수업 녹화영상 제공 ④ 동영상 콘텐츠 강의 제공 ⑤ 대체 과제 제공 후 지도(피드백)</p>
--

## 마. 강의실 방역 관리

1) 담당 교강사가 방역 책임자가 되어 강의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

구분	시행 방법
강의실 내 취식 금지	강의실 내 음식물(음료 포함) 섭취 금지
교강사/수강생 위생수칙	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/ 입실 전 손소독제 사용 / 공용물품 소독 후 사용
환기 조치	수업 중 수시 환기

※ 강의실 내 한 칸 띄우기 및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음

## 2. 성적평가 방식

상대평가	절대평가 (규정에 정해진 과목에 한해 가능)	P/F
A 최대 50%까지, B~F 제한 없음	A~F 제한 없음	P or F

- 1) A등급은 최대 50%이내까지 가능하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난이도에 따라 성적이 부여되며, 부당한 등급상향 요구는 불승인 처리함
- 2) 상대평가인 과목도 최종 상대평가 대상인원이 10명 미만이면 절대평가로 적용됨 (개강 15주차 기준, 수강생 중 장애학생/학점교류생/대학원생은 절대평가 대상인원임)
- 3) 절대평가 시 총 수강생의 70%를 초과하여 A를 부여하면평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- 4) 성적평가는 중간시험, 기말시험 등 시험성적과 과제물, 발표, 출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

## 3. 시험운영 방식

- 1) 과목별 시험 시행 여부와 방법은 강의계획서에서 확인
- 2) 추가시험 해당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 전후 1주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추가시험 응시 가능  
추가시험은 해당 시험 1주일 이내에 실시하며, 그 과목의 최종성적은 A-까지로 제한

#### 4. 헤이영 출석부 이용 안내

1) 앱 사용 매뉴얼 : 학교 홈페이지 > 스마트캠퍼스 > 클라우드 > 헤이영캠퍼스 숙명



가. 강의실 출결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반드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입학하며, 핸드폰 분실 혹은 출석부에 출석이 누락된 경우 수업시간 내 담당교수에게 출석 확인

나. 과목별 출결에 관한 문의는 강의계획서에 공개된 교강사 이메일로 요청

다. 유고결석신청은 헤이영출석부에서 과목별로 신청

라. 생리공결 신청가능 대상일은 **개강일부터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말고사 직전일까지** 가능

(예) 규정상 생리공결일 포함하여 4일 이내 신청 가능함으로 기말고사 직전일 6/7 생리결석을 한 경우 6/10 자정전까지 헤이영출석부에서 신청해야 이후 신청권리는 소멸됨

2) 수업형태별 출석인정기준

출결 방식	강의실(비콘)	스노우보드	
		화상강의(zoom)	강의영상(녹화영상)
출석반영시점	즉시	수업 진행 다음날부터 결과 확인 가능	매 주 목요일(한 주차 시작일)부터 이전 주차 출결 여부 결과 확인 가능

3) 코로나 대응 출결 관리 기준

업무순	담당	조치내용
신고하기 (성명, 학번, 성별, 신분, 증상)	학생	- 코로나 확진 즉시 해당 교과목 교강사에게 이메일 신고 (등교 불가 사유와 확인가능한 증빙 등 첨부) ※ 홈페이지 <a href="#">코로나19 대처현황</a> 에서 "대학에 신고하기"  또는 헤이영캠퍼스 '코로나문진표'에서 별도로 필수 진행
대체수업 혹은 유고결석 제공	학생/교강사	- 확진 학생은 대체수업과 유고결석 중 선택하여 1) 교강사에게 대체수업을 요청하거나 2) 헤이영출석부에서 과목별로 유고결석(신병)을 신청함 * 제출 증빙 : 보건당국 통보 문자 화면 캡처

※ 유고결석 사유별 기준 **[강의형태가 대면 및 실시간 원격수업인 경우에 한함]**

- 학칙시행세칙 제28조에 의거하여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헤이영 출석부 앱에서 과목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요청하면 출석으로 인정(유고결석 처리)할 수 있습니다.

출석인정사유	구체적 기준	비고
1. 신병	<p>① 등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의 경우(2주 이내 결석만 인정함) *진단서, 진료확인서, 의사소견서 제출</p> <p>②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한 기간 (제1군~제4군 전염병/콜레라, 장티푸스, 간염, 일본뇌염, 수두, 홍역, 결핵, 독감 등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※ <b>코로나19 대응 출결관리(코로나 대응기간 적용)</b> 보건당국으로부터 등교 중지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</p> <p>1) 학교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처현황 접속 &gt; 대학에 신고</p> <p>2) 유고결석 처리를 원할 경우, 등교 중지 기간 동안 학생이 유고결석(신병)을 신청한 기간 인정 처리</p> <p>* 보건당국 통보 문자 화면 캡처 제출</p> </div>	신청 및 승인 (헤이영 캠퍼스)
2. 직계가족사망	<p>①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일(휴일포함)</p> <p>② 조부모 사망 시 3일(휴일포함)</p> <p>*사망진단서 제출</p>	
3. 교육실습	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	
4.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의 조기취업	<p>입사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용 서식에 내용 작성하여 학부(과)장, 학사팀 승인을 거쳐 최종 교강사에게 제출</p> <p>* 신청조건 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, 5인 이상 고용보험사업장 정규 취업자(세부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참조)</p> <p>* 서식: 홈페이지&gt;학사정보&gt;기타&gt;문서양식함&gt;출석인정신청서(조기취업생용)</p>	교강사에 직접 제출
5. 그 밖의 공식 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(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)	<p>공식행사 인정 범위</p> <p>① 학부(과)장, 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참석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</p> <p>② 졸업여행 및 졸업앨범 촬영일(공지사항 화면 캡처)</p> <p>③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(공문확인)</p> <p>*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 관련 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</p>	신청 및 승인 (헤이영 캠퍼스)
6. 생리 결석	<p>① 생리통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생리공결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</p> <p>② 주기별 1회/학기당 최대 4일 인정되며, 생리공결일을 포함하여 4일 이내 신청해야 함</p>	
7. 백신 결석 (코로나대응기간 한시 적용)	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병 처리 기준에 따라 증빙 확인 후 출석 인정 가능	